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(1248)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**진 두 생**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이 미세먼지로 한정되어 있고, 예보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이 상위법령과 불합치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제를 추진하기 위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